

2024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[드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]

경기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의 기술 조기 상용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4년 드론산업 육성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7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
- 주최/주관 : 경기도 / (재)경기테크노파크
- 사업기간 : 2024년 4월 ~ 12월

II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4년 7월 17일(수) ~ 예산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 : 경기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*
 - *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
 - * 2024년에 타 시·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드론 유통기업 및 판매업만하는 기업은 신청불가 (공고문 내 [V.주의사항] 확인 필수)

지원분야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규모
드론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	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(지식재산권/인증·시험 분석/마케팅/시험비행)	3개사 내외 (기업당 최대 5백만원)

* (기업 자부담) 道 지원금의 최소 30%이상 전액 현금 부담(부가세 기업부담)

드론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

- 지원목적 : 도내 드론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수요 상시 대응 및 기업 경쟁력 제고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		
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	• 드론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/ 인증·시험 분석 / 마케팅(전시회 참가, 카탈로그 등 제작) / 시험비행(실증)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			
	분야	대분류	소분류	지원 한도 (1건당)
	지식재산권	국내	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 출원	2,000천원
		해외	PCT/디자인/상표 출원	3,000천원
	인증시험분석	국내인증	제품 인증 또는 시험분석	5,000천원
			경영 인증	5,000천원
			품질 검증	3,000천원
		해외인증	해외 인증	5,000천원
	마케팅	마케팅	국내외 전시회 참가	4,000천원
			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(국문, 영문 등)	2,000천원
시험비행 (실증)	드론 시험비행	지원항목	지원범위	3,000천원
		시설 임차료	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※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, 세금 계산서(영수)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 기관(시설)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 (사설기관을 통한 임차 지원 불가)	
		장치비	발전기(야간테스트 진행 시) 등 기타 필요가 인정되는 장치비	
		드론 보험료	드론보험(영업배상책임) 가입에 따른 보험료	
* 인증시험분석기관은 국가출연 연구기관, 대학교, 정부 산하기관, 정부공인(지정)기관 등에 한하여 지원 가능				

- 지원규모 : 3개사 내외,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
 - 분야별 지원금 규모 내 분야별 자율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단, 접수순 예산 소진에 따라 최대 지원가능 금액 변동 가능
- 선정 및 지원방법
 - 선정방법 : 기업별 신청순서에 따른 지원
 - 선정기준 :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내용 승인
 - 지원방법
 - 승인된 신청내역에 따라 선정기업은 과제 추진 및 사업비 소진 후 관련 결과(증빙)서류 제출

- 결과(증빙)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의 계좌로 정산 입금
- 단, 신청내역 승인 전 진행된 과제 또는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

○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추진절차	추진내용	일정
사업광고 및 홍보, 신청접수	○ 사업광고 및 신청서 접수 * 신청순서에 따른 지원	7월
▼		
법위반사실 요청·조회	○ 서류검토 ○ 신청기업(서류완비) 대상 법위반사실 조회 진행 (경기TP → 경기도 → 신청기업 소재 지자체)	상시
▼		
지원기업 선정 및 승인 통보	○ 지원 적격기업 대상 신청내역 승인 ○ 신청내역 승인 통보	상시
▼		
과제추진	○ 선정기업은 승인된 신청내역에 대한 과제추진	승인통보 이후
▼		
결과보고서 접수	○ 종료 과제에 대한 결과(증빙)서류 상시 접수	~11월 29일
▼		
사업비 정산 및 지급	○ 결과서류 검토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	서류접수 후 2주 이내

IV

신청안내

- 신청기간 : '24년 7월 17일(수) ~ 예산소진 시까지 ※ 접수순 마감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⇒ 사업광고)
- * (제출요령) 파일명은 '기업명_지원분야_사업명' 으로 하여,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
예시 : ㈜△△_기업수요맞춤형지원.zip

제출서류

*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서류발급 및 제출

제출서류	드론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	비고
▪ 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	
▪ 사업자등록증명원	필수	
▪ 중복수혜금지 등 서약서 등	필수	
▪ 정보활용동의서	필수	
▪ 국세 / 지방세 납세증명	필수	홈택스/위택스
▪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필수	
▪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확인서	필수	
▪ 법위반사실 관련 이의신청서	해당시	
▪ 최근2년 이내 드론사업 증빙	필수	

V

주의사항

지원제외 대상

- 드론 관련 유통 및 판매만 수행하는 기업
- 2024년에 타 시·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-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
- 동일한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정부, 자치단체, 조합, 단체, 정부 산하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예정으로 중복수혜 대상인 경우
- 신청일 기준 체납 중인 기업
- 부도, 법정관리 중인 기업 또는 과제 신청일, 선정 이후 과제추진 기간 중 휴·폐업 상태의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
-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-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

기타

- 신청인(신청기업)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(신청기업)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조례」에 의거해 범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(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순 지원 방식으로 이의신청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)
-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 보조금 반환, 사업선정 취소 및 추가 페널티 부여(3년 이내 참여제한)
- 적용법률
 - ↳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↳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↳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↳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VI

문의처

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담당자 031)500-3159

경기도 고시 제2024-22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,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. 19.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1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
1.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제외·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
가. 제외·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

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
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- 4) (자금·용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
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가. 적용법률

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
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
6.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범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하다. 삭제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서식2)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5)
- 붙임 1. (서식1)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2. (서식2)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
3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